

순천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규정

제정 1996. 4. 30.
개정 2000. 11. 22.
개정 2007. 6. 26.
전부개정 2011.8. 19.
개정 2013. 12. 10.
개정 2017. 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순천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(이하 “공동 실험실습관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공동실험실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공동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기구의 전반적인 관리·운용
2. 공동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기구의 구입·설치 및 공동 이용 제도에 관한 사항
3. 실험실습 및 연구결과 등에 대한 상담 업무
4. 산·학·연 협동 연구를 위한 장비 이용에 관한 사항
5. 학내 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(개정 2013. 12. 10)
6. 그 밖의 공동실험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13. 12. 10)

제3조(조직) ① 공동실험실습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공동실험실습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,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직원, 연구원을 둔다.
- ③ 관장은 필요할 경우 기자재 분야별 분석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연구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(임무) ① 관장은 공동실험실습관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행정실은 공동실험실습관의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동실험실습관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
2.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는 관장, 기획처장, 공동실험실습관 행정실장과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행정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6조(재정) ① 공동실험실습관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.(개정 2017. 2. 23.)

- ② 관장은 기자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7조(기자재의 이용절차 등) 관장은 공동실험실습관에서 보유 중인 기자재의 종류,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공동실험실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1996. 4. 30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0. 11. 2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 6. 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1. 8. 1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12. 10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2. 23.)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부터⑥까지 생략

⑦ 순천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재정) 본문 중 “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”를 “대학회계”로 한다.

⑧부터⑭까지 생략